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6 -76호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의거 허가 취소됨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3-16
- 점용위치 : 흥해읍 오도리 325-1번지선
- 점용목적 : 짚라인 도착데크 설치
- 허가기간 : 2013. 6.20. ~ 2016. 6.19.
- 허가면적 : 340㎡
- 취소 연월일 : 2016. 6.15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239
- 피허가자 성명 : (주)오도개발

2016. 6.22.

포 항 시 장